

의안번호	2208085
의 퇴 인	채현일의원
회 답 일	2024.12.24.
추 계 번호	24D549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료 지원,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 재해보상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10억 2,500만원, 2030년 442억 2,0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130억 6,200만원(연평균 426억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료 지원 (안 제14조제1항)	682	696	710	724	724	3,536	707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 (안 제14조제2항 신설)	40,259	41,024	41,804	42,598	43,407	209,092	41,818
재해보상 (안 제14조의2 신설)	84	85	87	89	89	434	87
합계	41,025	41,805	42,601	43,411	44,220	213,062	42,612

주: 본 추계는 자율방범대원의 수당을 의용소방대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수당 단가, 자율방범대원 활동 시간 및 인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제1항(경비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의 운영(사무실·초소의 설치 비용 및 임차료를 포함)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4조제2항(경비 등의 지원)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4조의2(재해보상 등)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제1항(경비 등의 지원)	○	—
2	안 제14조제2항(경비 등의 지원) 신설	○	—
3	안 제14조의2(재해보상 등)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안 제14조제1항에 따라 226개 시·군·구 단위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1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안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수당은 유사사례인 소방청의 의용소방대 수당을 참고하여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료 지원(안 제14조제1항)

- 본 추계에서는 임차료 지원대상 사무실 수, 월임차료, 임차기간(12개월)을 곱하여 산출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0%

- 추계결과,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8,200만원, 2030년 7억 2,400만원으로 추정
- 전제한 바와 같이, 시·군·구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1개소씩 있고 국가 등이 월임차료를 50%를 지원
 - 이때, 사무실 평균 면적은 27㎡로 가정하고 월임차료는 전국 평균 17,900원/㎡ 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표 2] 사무실 임차료 지원 비용 추정: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월임차료(a, 원/㎡)	18,641	19,014	19,395	19,782	19,782	96,615
임차료 지원 비용 (=a×27㎡×226개×50%, 백만원)	682	696	710	724	724	3,5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안 제14조제2항 신설)

- 본 추계에서는 자율방범대원 수에 연간 1인당 수당을 곱하여 산출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자율방범대원의 수는 9만 824명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²⁾
 - 자율방범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의용소방대 수당(1명당 연간 42만 6,889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동 금액에 최근 3년간(2022~2024년)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를 적용하여 산출
 -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결산 기준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액은 총 406억 4,322만 3,000원³⁾이고, 의용소방대원 수는 95,208명으로 대원 1인당 소집수당은 연간 42만 6,889원임⁴⁾

2) 2019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자율방범대원의 수가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는 감소·정체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원의 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소집수당으로 시간당 12,926원을 지급하고 있음

4)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이 운영되면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파악한 현재 자율방범대원 1인당 평균 활동시간은 1년에 약 33.6시간 정도로,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시간당 단가 12,926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약 43만 4,314원으로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한 수준임

- 추계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90억 9,200만원으로 추정

[표 3]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율방범대원 수(a, 명)	90,824	90,824	90,824	90,824	90,824	454,120
1인당 수당(b, 원)	443,266	451,688	460,270	469,015	477,926	-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40,259	41,024	41,804	42,598	43,407	209,0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재해보상(안 제14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재해보상을 의무화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손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자율방범대원 수에 1인당 보험료를 곱하여 산출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자율방범대원의 수는 9만 824명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⁵⁾
 - 1인당 보험료 지원단가(2023년 기준 862원)⁶⁾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400만원, 2030년 8,900만원으로 추정

[표 4] 자율방범대원 재해보상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율방범대원 수(A, 명)	90,824	90,824	90,824	90,824	90,824	-
1인당 보험료(B, 원)	920	939	957	976	976	-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84	85	87	89	89	4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2019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자율방범대원의 수가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는 감소·정체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원의 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6)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1인당 보험료는 862원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료 지원,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 재해보상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10억 2,500만원, 2030년 442억 2,0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130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무실 임차료	682	696	710	724	724	3,536
수당 지급	40,259	41,024	41,804	42,598	43,407	209,092
재해보상	84	85	87	89	89	434
합계	41,025	41,805	42,601	43,411	44,220	213,0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및 기념행사 비용은 의용소방대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